인지세법



[시행 2023. 1. 1.] [법률 제19198호, 2022. 12. 31., 일부개정]

기획재정부 (부가가치세제과) 044-215-4323

- 제1조(납세의무)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·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<개정 2022, 12, 31.>
 -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(連帶)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.

[전문개정 2010. 1. 1.]
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0. 6. 9.>
 - 1. "증서"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·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 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.
 - 2. "통장"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철한 문서를 말한다. [전문개정 2010. 1. 1.]
- 제3조(과세문서 및 세액)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(이하 "과세문서"라 한다) 및 세액은 다음 과 같다. <개정 2014. 1. 1., 2017. 12. 30., 2018. 12. 31., 2019. 8. 27., 2020. 3. 31.>

과 세 문 서	세 액
과 세 군 서 1. 부동산·선박·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	
관한 증서 	하인 경우:2만원
	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
	하인 경우:4만원
	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
	인 경우:7만원
	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
	인 경우:15만원
	기재금액이 1D억원을 초과하는 경우: asplot
p 레트램러스크 거리는 그의 브린기까기시	35만원
2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보험기관과의	제 1 호에 규정된 세액
급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	게 4 수에 그 거리 게이
	제 1 호에 규정된 세액
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	
하는 것	n non ol
4.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	3,000원
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	
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	
	제1호에 규정된 세액
판권,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	
관한 증서	
B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	제 1 호에 규정된 세액
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	
가,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	
률」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나 종합체육	
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	
원권에 관한 증서	
나.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	
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	
서	
7. 계속적·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	
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	
가,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에 따른 신	3DD원
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	
나. 삭제 <2020, 3, 31,>	
다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 2 조제 5 호에	 3NN 원
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	
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건 건 다음 기계	
X	

B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(모바일 상품권	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: 5D원
은 제외한다) 및 선불카드	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:
	200원
	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
	우: 400원
	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: BDD원
B의2. 모바일 상품권(판매일부터 7일 이내에	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
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것	우: 400원
은 제외한다)	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: BDD원
9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	400원
제 4 조제 2 항에 따른 채무증권, 지분증권	
및 수익증권	
1D. 예금·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, 환매	100원
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, 보험증권 및 신탁	
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	
11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 2 조제10호에	1 만원
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	
12.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	
가,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	1 만원
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	1,DDD원
나,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	
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	
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	200원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	
한 증서	
다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	
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, 「농림	
수산업자 신용보증법」 제4조에 따른	
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	
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	
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	
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	

-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,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(「주식・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, 이하 "과세대상 전자문서"라 한다)를 포함한다.<개정 2012. 6. 1., 2014. 1. 1., 2022. 12. 31.>
-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0. 1. 1.]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- **제4조(기재금액의 계산)**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.
 - 1.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: 그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
 - 2. 제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: 제3조제1항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
 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재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0. 1. 1.]

제5조(보완문서)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(이하 "보완문서"라 한다)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. 다만,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전문개정 2010. 1. 1.]

제6조(비과세문서)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 3. 2.,

2020. 6. 9.>

- 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(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
- 2.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
- 3.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
- 4.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
- 5.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
- 6.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
- 7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(複本) 또는 등본
- 8.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
- 9. 「우편법」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
- 10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에서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
- 11. 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」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
- 12. 「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

[전문개정 2010. 1. 1.]

제7조(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)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(이하이 조에서 "국가등"이라 한다)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,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10. 1. 1.]

제8조(납부)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「수입인지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(이하 "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"라 한다)를 첨부하여 납부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. 1., 2014. 12. 30.>

- ②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.<개정 2022, 12, 31.>
- ③ 제1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22. 12. 31.>

[전문개정 2010. 1. 1.]

제8조의2(결정 및 경정)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8조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한다.

[전문개정 2010. 1. 1.]

- **제8조의3(세액의 환급 및 공제)** ① 제8조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0. 1. 1.]

제8조의4(납부특례)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5호의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양도증서에 관한 인지세는 특허청장이 징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1. 1.]

제9조(세액의 재계산)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10. 1. 1.]

제10조(소인)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「수입인지에 관한 법률」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(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말한다)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(消印)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2. 30.>

[전문개정 2014. 1. 1.]

- 제11조(질문·검사) ①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인지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나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과세문서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31.>
 - ②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.<신설 2018.

12. 31., 2020. 6. 9.>

[전문개정 2010. 1. 1.]

제12조 삭제 <2010. 1. 1.>